



([www.arko.or.kr](http://www.arko.or.kr))

---

---

## 2006 문화예술단체 기금조성 실무 워크숍

---

---

- 일시 : 2006년 7월 6일(목) 오후 2시~6시30분
- 장소 : 아르코미술관 3층 세미나실
- 주제 : 예술단체 재원조성의 실제와 발전방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목 차

진행 | 김의숙 (주)파임커뮤니케이션즈 대표

## 시작에 앞서

---

예술단체 자원조성자를 위한 출발 .....	1
김의숙 / (주)파임커뮤니케이션즈 대표	

## 공공기금의 종류와 지원 방식

---

2007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개요 .....	4
박두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진흥위원	
경기문화재단의 지원정책 .....	19
표신중 / 경기문화재단 예술진흥팀장	

## 민간 지원 사례

---

민간부문 자원조성 및 운영(SIDance의 사례를 중심으로) .....	28
황병철 / 시댄스(SIDance) 기획팀장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소고 .....	36
서진석 / 대안공간 루프 대표	
기업 입장에서의 문화예술 지원 .....	38
이병권 / 한국메세나협의회 사무처장	
문화예술 기부금에 대한 세제 .....	41
임주연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대외협력팀장	

## 참고 자료

---

공공기금의 유형 및 지원 방식 .....	45
------------------------	----

# 예술단체의 재원조성자를 위한 출발

김의숙 (주)파임커뮤니케이션즈 대표

## 1. 예술단체의 재정 계획과 운용

### 재정(財政)[명사]

1. 국가 또는 공공 단체가 그 존립·유지에 필요한 재산을 조달·관리·사용하는 일체의 작용.
2. 개인·가정·단체 등의 경제 상태.

예술단체 재정의 현실은 **각인각색 [各人各色]**이다: 예술단체의 특성별로 다양한 형태의 재정구조나 상황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는 이 워크샷을 통해 일반화 시킬 필요가 있음을 느낀다. 다소 원론적 일수 있으나 각자가 속한 단체의 재정의 현실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사례1.** 20년간 공연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A극단은 연간 4-5편의 공연을 제작하고 극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 극단의 기획자는 최근 문화예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내용으로 난감해졌다. 바로 이 단체의 **재정자립도**에 관한 질문에 답해야 하는 상황. 평소 극단의 재정운영방식이 수입에 지출을 맞추는 방식이므로 재정자립도를 굳이 따지자면 98%의 자립을 가지고 있고, 공연제작에 필요한 제작비와 운영비와 경상유지비를 따져 지출에 수입을 맞출 경우 재정자립도 5%가 된다고 하였다.

**사례2.** 비영리 예술단체로서의 영국셰익스피어 극단(이하 RSC)은 셰익스피어 연극유산을 보존, 발전, 전파하고 둘째 세계 연극의 발전과 향상에 일익을 담당하며, 셋째 예술교육을 활성화 하는 것을 그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단체의 공연물은 스트라트포드와 런던의 극장, 그리고 영국전역과 세계 순회공연을 통해 제공되며, 또한 이 작품들은 지역사회와 각 학교들의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으로 제공되어 교육의 수단으로써 활용된다.

이 단체의 재정구조는 정부의 지원금이 40%를 차지한다. 영국예술위원회로부터의 직접 지원을 받는 4개의 국립공연예술단체의 하나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매해마다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각종 기부 프로그램과 스폰서와 회원사를 운영하는 펀드레이징 활동과 박스오피스(티켓판매수입) 자금을 확보 한다. RSC의 재정 자립도는 티켓수입과 펀드레이징 그리고 상업적인 활동으로 60%를 자체적으로 운영, 재정자립도는 60%이상 유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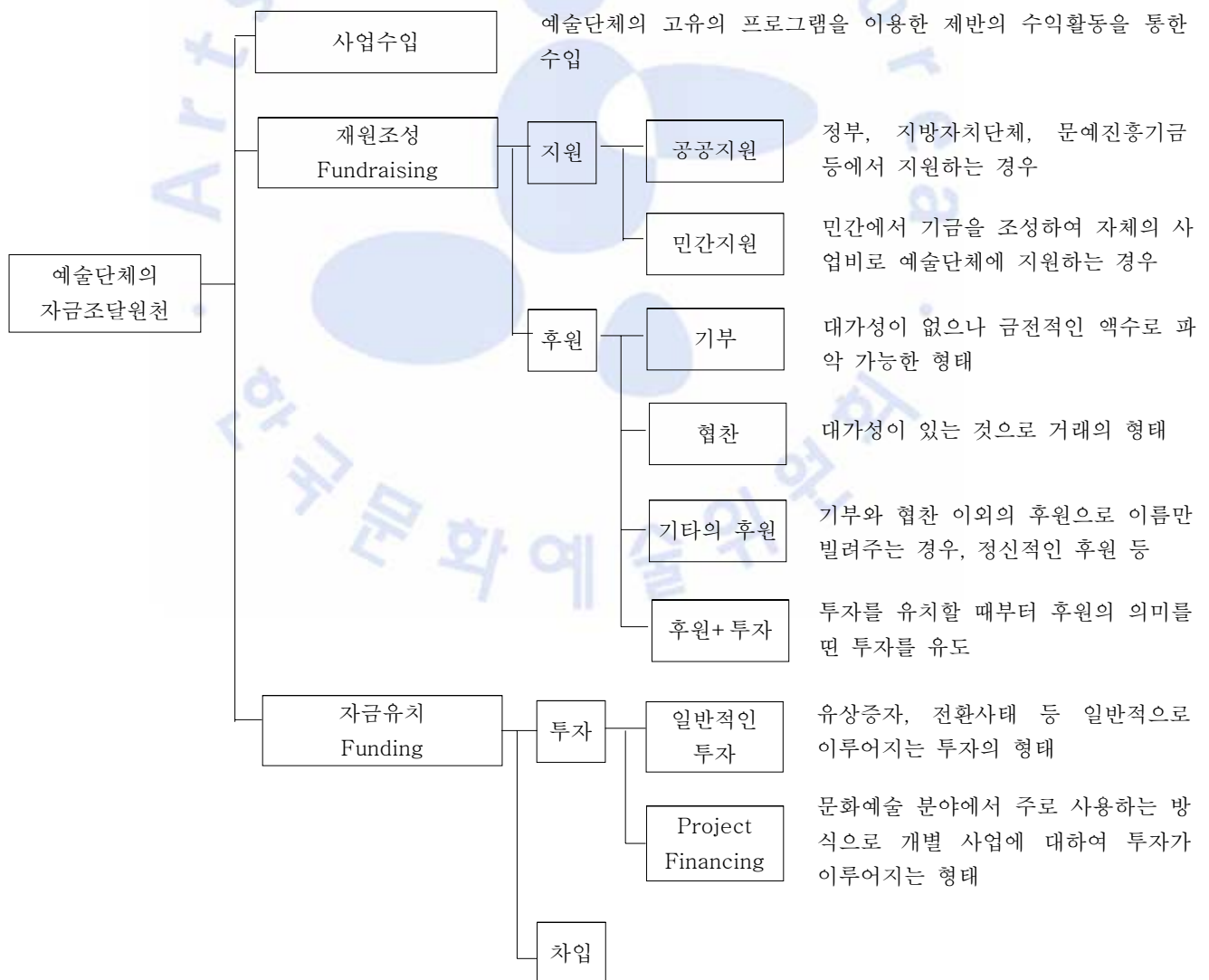
**사례3.** 서울인근의 개인이 운영하는 미술관. 지자체 문화재단과 기금을 매년 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받는다. 미술관의 입장수입으로는 두 달의 한번 꼴의 기획전

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각종지원금으로 기획전의 예산으로 사용하여 도움을 받는다. 그러나, 운영비와 인건비는 관장이 책임지고 있었다. 5년 후 관장개인의 경제적인 상황이 악화, 위험수위를 넘어서 가까운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고 후원회를 조직하여 격월로 음악회를 열어 후원회원을 모집하고 기부금을 받아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

● 위의 사례들과 같이 단체의 재정구조에 대해 생각해보자.

- 1) 연간 사업과 운영을 위한 예산에 대해 계획은 언제,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 2) 1번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
- 3) 자금의 운용을 담당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 4) 자금조달의 원천은 무엇인가? 각각의 비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 5) 단체의 재정자립도는?

◎ 예술단체의 자금 조달의 원천 구성



위의 표에서와 같이 예술단체의 자금의 조달 원천은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 기부, 협찬 이외에도 은행으로부터의 차입, 지원금 수령, 투자의 유치, 출연 등 여러 가지가 있다

## 2. 재원 조성을 위하여

**재원 조성(Fundraising):** 어떤 단체가 그 단체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수행하는 예술 프로그램 운영과는 직접적으로 연계 되지 않는 별개의 노력과 활동을 통해 외부로부터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 나가는 모든 활동을 지칭한다.  
(김성규, 문화예술단체의 재원조달의 개요, 5p)

- 예술단체의 친숙한 재원조성 활동
  - 충성도 높은 회원들의 후원회원화(국립극장 발전기금에서 진행하는 후원회, 예술의 전당후원회를 통한 기부금활동)
  - 인맥을 통해 기업이나 재력가와의 친분을 유지하여 기부나 협찬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
  - 큰 규모의 행사나 축제는 중개인들과의 계약을 통해 기부 협찬 유지노력
  - 협찬제안서를 마련하여 접촉
  
- ◎ 기부, 협찬등의 활동이 몇 몇의 사회공헌도가 높은 기업으로 집중되어 있거나, 외형적인 이미지등으로 접근하고 있어 성공률 낮으며, 점점 더 다른 NPO 단체의 펀드레이징 매니저와 경쟁하는 추세이다
  
- 전문화된 재원조성계획이 필요하다.
  - 예술단체의 일반사업목적과 프로젝트에 대한 정확한 이해
  - 사업에 필요한 전체 재정의 흐름과 관리방법에 대한 상황판단
  - 잠재적인 기부자를 꾸준히 발굴하는 리서치 활동
  - 국고, 지자체등의 관련 기관들의 연간 지원 정책과 사업방향에 대한 관심
  - 단체의 사업의 추진과정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알릴 수 있는 채널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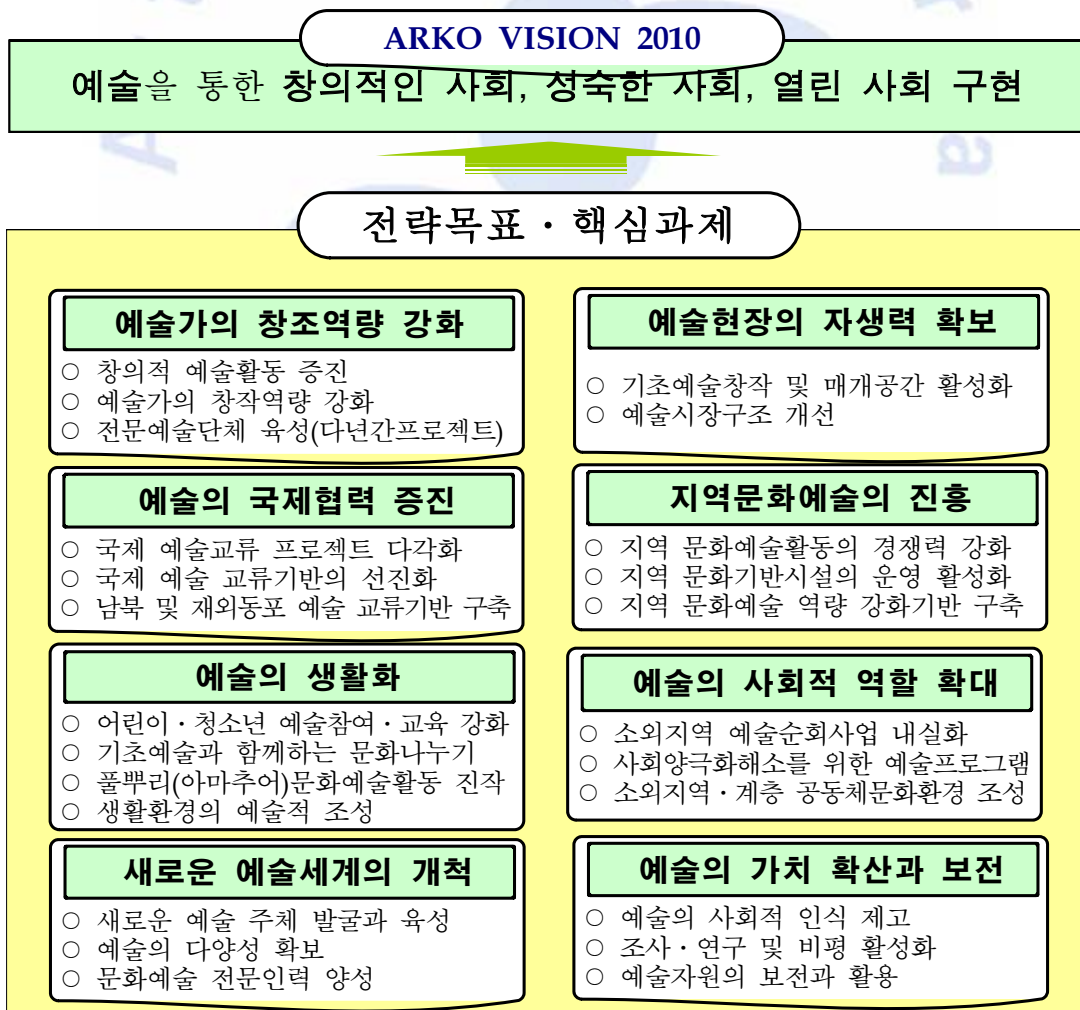
# 2007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개요

박두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진흥위원

## 1. 추진 경과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 2005. 8. 26(출범식 2005.9.29)
- 장르별·기능별 소위원회 구성 : 2005. 10. 28
- 예술위원회 비전 수립 및 선포 : 2005.10.13 ~ 2006. 4. 5
- 2007년도 문예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 2006.5월 말

## 2. 예술위원회 비전 : 「ARKO 비전 2010」 “예술로 아름다운 세상”



### 3. 2007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개요(\*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임)

#### □ 보조 사업

#### ○ 직접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대상사업		'07예산(안)	비 고
예술창조활동지원	예술창작및표현활동지원	8,244	정기공모/2006.10.1~15 접수예정
	계기성기획사업지원	1,200	수시공모/연중 접수/분기별 심의
공연예술전문단체집중육성사업		3,000	정기공모/2006.10.1~15 접수예정
신진예술지원	신진예술가뉴스타트지원	1,300	정기공모/2006.10.1~15 접수예정
	차세대작가발굴육성프로그램	200	정기공모/2006.10.1~15 접수예정
다원예술지원		1,200	정기공모/2006.10.1~15 접수예정
예술전용공간지원	문학관 지원	500	정기공모/2006.10.1~15 접수예정
	공연예술전용공간지원	1,240	정기공모/2006.10.1~15 접수예정
예술보존조사연구지원(공모)		1,050	정기공모/2006.10.1~15 접수예정
문화예술국제교류지원	문화예술국제교류지원	3,297	정기공모/2006.10.1~15 접수예정
	국제레지던스프로그램운영지원	280	정기공모/2006.10.1~15 접수예정
남북및재외동포예술교류기반구축		500	정기공모/2006.10.1~15 접수예정
문화소외지역대상문화나눔	소외지역문화순회사업	7,500	별도공모/2007.2월 공고 예정
예술전문인력육성	청년인턴채용지원	1,000	별도공모/2007.2월 공고 예정
예술창조활동지원	중진예술가펠로우십	1,000	신규사업/추진방안 검토 중
예술창조역량강화특화사업	공연예술프로그램특성화사업	2,400	신규사업/추진방안 검토 중
	시각예술 기획사업 발굴지원	820	추진방안 검토 중
사회공헌활동지원	원로문예인복지지원	403	56명 지원/일몰제 실시
전국연극제및무용제지원	전국 연극제	500	한국연극협회 공동 주최
	전국 무용제	370	한국무용협회 공동 주최
예술전문인력육성	무대예술인 재교육 지원	1,500	한국배우협회 지원
기간문예단체지원		1,160	예총, 민예총 지원
<b>계</b>		<b>38,664</b>	<b>경상사업비(117,320)의 33.0%</b>

○ 지자체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대상사업		'07예산(안)	비고
지역문화예술지원	지역문예진흥지원	4,800	별도계획 수립 추진(2007.1월)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	5,000	별도계획 수립 추진(2007.1월)
계		9,800	경상사업비(117,320)의 8.3%

○ 간접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대상사업		'07예산(안)	비고
작은도서관등 복합문화공간조성	작은도서관 조성	5,000	국립중앙도서관 및 각 지자체(미정)
	문화소외지역 생활문화환경가꾸기	1,500	공공미술추진위원회
	생활친화적 복합문화공간	2,000	전국문화원연합회
문화소외지역대상 문화나눔	문화소외계층대상 문화나눔	13,700	별도 민간추진기구 운영
	지역문예기반시설활용프로그램	8,737	전국문예회관연합회/한국박물관협회
취약계층대상 문화예술교육지원 등 지원	노인장애인아동복지시설 방문 예술교육	7,40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한국메세나협회의
	지방문화원중심 지역향토문화체험	2,000	전국문화원연합회
문화의 달 행사		320	별도 민간추진기구 운영
예술창조역량강화 특화사업	문예지 게재 우수작품선정 지원	1,500	별도 민간추진기구 운영
예술보존조사연구	문학예술사전 발간	150	별도 민간추진기구 운영
계		42,307	경상사업비(117,320)의 36.1%

□ 자체 사업

○ 직접운영사업

(단위 : 백만원)

대상사업		' 07예산(안)	비 고
지역문화협의체운영		100	자체 사업계획 수립 추진
국제예술교류기반조성	베니스비엔날레한국관 운영 및 전시	513	상동
	해외예술기획프로그램	547	상동
신진예술지원	차세대작가발굴육성프로그램 (사이버문학광장운영)	400	
예술창조역량강화특화사업	시각예술 기획사업 발굴지원 (인사미술공간 운영)	680	상동
문화예술서적발간	문화예술기획시리즈발간	357	상동
	문예연감발간	135	상동
문화예술사회공헌활동지원 및 이미지제고 사업	기부금사업	5,380	상동
	문화예술이미지제고프로젝트	397	상동
기초예술정책연구사업		698	상동
<b>계</b>		<b>9,207</b>	<b>경상사업비(117,320)의 7.8%</b>

○ 지원시설사업

(단위 : 백만원)

대상사업		' 07예산(안)	비 고
예술극장 운영	예술극장 운영	1,947	자체운영계획 수립 추진
	예술극장 기획프로그램	305	
	소 계	2,252	
미술관운영	미술관 운영	487	상동
	미술관 기획프로그램	661	
	소 계	1,148	
예술정보관운영	예술정보관 운영	349	상동
	예술정보관 기획프로그램	970	
	소 계	1,319	
문화예술연수원운영	연수원 운영	418	상동
	연수원 기획프로그램	862	
	소 계	1,280	
대학로복합공연장 조성 및 운영	대학로복합공연장 조성	11,000	상동
	대학로복합공연장 운영	333	
	소 계	11,343	
<b>계</b>		<b>17,342</b>	<b>경상사업비(117,320)의 14.8%</b>

#### 4. 2007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주요사업 세부내용

##### ① 지원목표 :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

##### 1-1. 예술창작 및 표현활동 지원

###### 1) 사업개요

창의성과 예술성이 높은 다양한 창작·발표 활동과 독창적인 기획행사 및 전국 단위의 대규모 예술축제를 지원

###### 2) 지원신청자격 : 예술단체, 예술인, 문화시설 운영자, 공연기획자

※ 문학, 시각예술, 음악, 연극, 무용, 전통예술 분야(다원예술 제외)

###### 3) 지원대상사업 및 지원규모

분야	지원대상사업	지원규모
문학	시·시조, 소설, 희곡, 평론, 동시·동화, 수필 등 개인의 문학작품	1,200만원
시각예술	○ 단체전시 -전문 기획자가 선명한 기획의도로 기획한 다수 작가가 참여하는 전시 -작가들의 그룹 및 단체 전시 ○ 개인전시 -10년 이상 지속적인 활동을 해 온 작가, 또는 1회 이상 개인전을 개최한 경력이 있는 작가의 전시	1,000만 ~ 3,000만원
음악	-성악, 관현악, 실내악, 오페라, 음악제 등 장르와 형식에 관계없이 개인과 단체가 개최하는 창작과 기성 작품에 대한 연주·발표회 및 공연 -특정한 주제를 갖는 기획공연 프로젝트(음악 중심의 복합공연 포함) -전국규모 페스티벌 행사	500만 ~ 5,000만 원
연극	-창작작품 초연 및 기성작품 재공연 -특정한 주제를 갖는 기획공연 프로젝트(연극 중심의 복합공연 포함) -전국규모 페스티벌 행사	1,000만 ~ 5,000만원
무용	-창작작품 초연 및 기성작품 재공연 -특정한 주제를 갖는 기획공연 프로젝트(무용 중심의 복합공연 포함) -전국규모 페스티벌 행사	1,000만 ~ 5,000만원
전통예술	-관현악, 실내악 등 전통국악 및 창작국악 공연 프로그램 -판소리, 창극, 여성국극, 전통민속, 풍물, 사물놀이, 탈춤, 전통무용 등 전통예술분야 공연프로그램 지원 -일반적인 공연과 차별화하여 특정한 주제나 목적을 갖고 추진하는 독창적이고 우수한 전통예술 기획공연(전통예술 중심의 복합 공연 포함) -전통 및 민속예술장르를 대표하는 전국규모의 행사 지원	500만 ~ 5,000만원

###### 4) 추진시기 : 2006.9월 신청공고 ⇒ 2006.10월 신청접수 ⇒ 2006.11~12월 지원심의 ⇒ 2006.12월~2007.1월 심의결과 발표

## 1-2. 공연예술전문단체집중육성사업

### 1) 사업개요

창작능력, 인적구성, 운영 시스템의 전문성 등 여러 측면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공연예술 전문단체를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다년간 지원하여 단체의 예술창작 역량 및 국제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창작활동 기반을 제공함

2) 지원신청 자격 : 국내 공연예술전문단체(음악·무용·연극·전통예술)로서 창작 및 공연활동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공연예술단체

3) 지원대상사업 : 공연예술 전문단체의 연간 사업운영 경비 지원

※ 지원조건(필수 이행 조건)

구분	지원대상단체	필수 지원(이행)조건	비고
○ 전통예술 전문단체	국악예술단, 국악합주단, 전통연희단, 전통무용단 등	연간 공연 3회 이상 개최 (창작 초연 2작품 포함)	창극전문단체 제외
○ 음악창작 및 연주전문단체	전문실내악단, 교향악단, 합창단, 중창단 등 전문단체	연간 연주회 3회 이상 개최 (창작 초연작품 2작품 포함)	오페라전문단체 제외
○ 무용창작 및 공연전문단체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전문무용단	연간 편수에 관계없이 4회 이상 공연 3년간 창작초연 2작품 이상 발표	-
○ 연극창작 및 공연전문단체	연극분야 전문극단	연간 2편 이상 공연(편당 15일 이상) 3년간 창작초연 2작품 이상 발표	유지컬전문단체 제외

### 4) 지원규모

○ 지원기간 : 3년간

- 매년 약정이행 여부와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범위 내 지속지원 여부 결정

○ 지원규모 : 사업 유형·성격·규모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

- 단체별 년 간 5천 만 원 ~ 1억 5천 만 원 내외

5) 추진시기 : 2006.9월 신청공고 ⇒ 2006.10월 신청접수 ⇒ 2006.11~12월 지원심의 ⇒ 2006.12월~2007.1월 심의결과 발표

## 1-3. 기타 사업 : 현재 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 1) 계기성기획사업

연도 중반 문화예술 각 분야에서, 사회적 주요계기를 맞이하여 기획되거나 정례 공모사업 신청기간 중 신청여건 불비로 신청치 못한 사업을 공모나 위원회가 발굴로 선정 지원함으로써 지원사업의 경직성을 해소함

### 2) 중진예술가펠로우쉽(2007년도 신규 사업)

활발한 예술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진예술가들이 예술적 감성을 높여 보다 수준높은 창작물을 창조할 수 있도록 창작소재 개발이나 취재 등 펠로우쉽을 통한 창작기반을 제공함.

### 3) 예술창조역량강화 특화사업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등 예술 주요 분야에 걸쳐 분야별 특성에 따른 창작 활성화 특화사업 개발 및 집중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한 예술가의 창조 역량을 강화함

- 문예지계재우수작품선정지원 : 운문 편당 1백만원, 산문 편당 4백만원 지원
- 시각예술기획사업발굴지원 : 전시기획 발굴,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인사미술 공간 운영 등
- 공연예술프로그램특성화사업(2007년도 신규사업) : 창작극 활성화 프로젝트, 안무가 집중육성, 창작극 연주 지원, 전통예술 무대양식화 사업 등

## ② 지원목표 : 새로운 예술세계의 개척

### 1-1. 신진예술가 지원

#### 1) 사업개요

- 역량있는 젊은 예술가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지원, 전문예술인력의 교육·연수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통하여, 젊은 예술가의 창작을 활성화하고 차세대 중견 예술인력으로 육성
- 시장논리에 의해 기피되는 신진예술가의 생애 첫 작품 발표를 지원하여 신진예술가들의 본격적인 예술계 입성 및 창작 활동기반 구축기회 제공

#### 2) 지원신청 자격 : 만 35세 이하의 예술가

- 음악, 무용, 연극, 전통예술, 다원예술 분야의 예술가
- 공연기획자, 음향, 조명, 무대, 의상, 분장 등 관련 분야 종사자 등

#### 3) 지원대상사업

- 신진예술가 지원 : 역량 있는 젊은 예술가 및 관련 분야 종사자 육성 지원
  - 공연 등의 작품 발표 지원
  - 국내 및 해외 연수(단,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연수는 대상에서 제외)
- 뉴스타트 프로그램 : 예술계에 첫 발을 내딛는 젊은 예술가를 발굴 지원
  - 해당분야에서 활동이 활발하고 가능성을 인정받은 신인이 예술계에 공식적

으로 데뷔하는 성격의 개인공연(개인 연주회, 작곡 발표회, 안무 등 데뷔 성격의 공연)

4) 지원규모 : 1천만원 내외

5) 추진시기 : 2006.9월 신청공고 ⇒ 2006.10월 신청접수 ⇒ 2006.11~12월 지원심의 ⇒ 2006.12월~2007.1월 심의결과 발표

## 1-2. 다원예술 지원

### 1) 사업개요

정형화된 기성 예술장르의 틀에서 벗어난, 독립·실험·대안적인 경향의 비주류 예술활동을 지원하여 다양한 예술 흐름의 수용 및 창조역량 배양

2) 지원신청 자격 :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 3) 지원대상사업

- 기성(순수) 예술 장르와 변별되는 독립(Indie)·실험·대안적인 경향의 예술 형식·내용·제작방식 등 비주류 예술 관련 활동(공연장, 길거리 등 실내외, Web 등 가상공간 무관)
  - 공연(페스티벌 포함), 전시, 퍼포먼스 등 창작 활동
  - 세미나, 워크숍 등 연구·연수 및 평론 활동
  - 도서, CD 등 시청각 자료의 발간·제작 및 보급 활동
  - 기타 이들 예술의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 공연, 전시, 음악 등 여러 장르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
  - 단, 형식·내용·제작방식 등에 있어 ‘여러 기성 예술 장르’가 단순하게 섞여 이루어지는 공연(페스티벌 포함)일 경우 지원신청 대상에서 제외함.

4) 지원규모 : 1,000만원~5,000만원

5) 추진시기 : 2006.9월 신청공고 ⇒ 2006.10월 신청접수 ⇒ 2006.11~12월 지원심의 ⇒ 2006.12월~2007.1월 심의결과 발표

## 1-3. 기타 사업

1) 차세대작가발굴육성프로그램 : 청소년 문예지 지원, 사이버문학광장 운영 등

2) 무대예술인 재교육 지원

3) 청년인턴채용 지원

### ③ 지원목표 : 예술현장의 자생력 확보

#### 1-1. 예술전용공간 지원

##### 1) 사업개요

공연예술 창작과 발표에 필요한 장르별 전용공간과 연습공간 확보 및 운영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 기초 인프라의 거점 확충 및 창작여건을 개선함

##### 2) 지원신청 자격

- 무용, 연극, 음악, 전통예술 공연을 발표할 수 있는 공간(전용소극장, 스튜디오, 기타 공연 가능한 복합공간)을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문화예술 단체 및 개인

##### 3) 지원대상 유형

- 작가들을 위한 창작집필 공간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전문창작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학관
-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분야의 전용 소공연장
- 기타 연습실, 스튜디오, 창작 및 공연(연주) 복합공간 등 공연예술전용공간

##### 4) 지원규모 : 1천만원 ~ 5천만원

- 공간유형·규모, 공간운영 프로그램 규모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
- 공연제작비, 기자재 구입비, 기술인력 인건비 등 공간운영 경비
- 일정 비율 대관 공연 등 일정 조건 지정

##### 5) 추진시기 : 2006.9월 신청공고 ⇒ 2006.10월 신청접수 ⇒ 2006.11~12월 지원심의 ⇒ 2006.12월 ~ 2007.1월 심의결과 발표

#### 1-2. 기타 사업

##### 1) 기간 문예단체 지원

##### 2) 지원시설 운영 : 예술극장, 미술관, 예술정보관, 문화예술연수원, 대학로 복합 공연장 조성 등

### ④ 지원목표 : 예술의 생활화

#### 1-1. 작은 도서관 등 복합문화공간 조성(복권기금사업)

##### 1) 사업개요

- 문화소외지역 내 유휴공간 및 각종 시설물을 생활친화적 문화공간조성으로

지역주민의 공동체 참여 문화 활성화 및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

- 주민밀집지역 및 문화소외지역 주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문턱낮은 생활 문화 공간을 조성해줌으로써 이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적 문화 불균형을 해소로 국가균형발전 도모

## 2) 사업내용 및 사업규모

- 문화혜택이 절실한 문화소외지역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마을단위의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지식정보 양극화 해소 및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서비스 제공 : 50억원
- 문화소외지역 내 유희공간 및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공공미술의 매개체를 통한 생활친화적 문화환경 가꾸기 : 15억원
- 농어산촌 지역 및 문화소외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주민의 문화적 수요에 부합하는 생활친화적 복합문화공간을 조성 : 20억원

3) 사업수행주체 : 전국문화원연합회, 공공미술추진위원회 / 예정

## 4) 사업집행절차체계 등

- 기본계획 확정 및 주관단체 사업계획 통보(문화관광부) → 주관단체에 지원액 통보 및 지원액 신청(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예산교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사업 공고 및 세부계획 수립·집행(문화예술단체) → 사업 수행 및 평가 추진(문화예술단체) → 실적보고(문화예술단체) → 결과보고(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사업실적 평가(문화관광부)

5) 추진시기 : 2007.2월

## 5] 지원목표 : 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

### 1-1. 문화소외지역 대상 문화나눔사업(복권기금사업)

#### 1) 사업개요

- 산간벽지, 도서지역 등 문화예술 접촉기회를 갖기 어려운 소외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순회활동을 통해 문화향수기회를 제공하고,
- 각 지역의 문예회관 및 사립박물관·미술관을 이용하여 우수한 예술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소외지역주민의 문화향수권 신장에 기여
- 경제적인 이유로 문화향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단체, 출판사, 공연·전시기획사 등과 연계하여(Matching) 우수한 문학도서를 나누어 주고, 각종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행사를 할인 또는 무료로 관람하게 함으로써 문화향수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제고함.

## 2) 사업내용

### ①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순회

- 사업개요 : 문화 인프라 시설이 인근에 부재하는 산간벽지, 농어촌지역, 도서지역, 공단지역, 장애인 시설, 교정시설, 군부대 등 문화소외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공연·전시 등 다양한 문화예술향수 프로그램을 보급할 수 있는 우수한 사업을 공모를 통해 선정·지원
- 사업비 : 7,500백만원
- 사업수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별도 추진기구 구성)
- 사업 집행절차·체계 등
  - 사업운영방안 결정(문화예술위원회) → 사업주관기관 선정(문화예술위원회) → 사업수혜자 구분(주관기관) → 사업수혜자 타당성 검토(문화예술위원회) → 사업시행(주관기관) → 사업평가(문화관광부, 문화예술위원회)

### ② 문화소외계층 대상 문화나눔

- 사업내용 및 사업규모
  - 문학나눔 : 우수문학도서, 문예지 보급(40억 원)
  - 전통나눔 : 국악 향수 확대 사업/나라음악 큰잔치(25억 원)
  - 공연·전시나눔 : 공연 및 시각예술 관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직접 보조(72억 원)
- 사업수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각 사업별 추진기구 구성)
- 사업 집행절차·체계 등
  - 사업운영방안 결정(문화예술위원회) → 사업주관기관 선정(문화예술위원회) → 사업수혜자 구분(주관기관) → 사업수혜자 타당성 검토(문화예술위원회) → 사업시행(주관기관) → 사업평가(문화관광부, 문화예술위원회)

### ③ 지역문예기반시설활용 예술프로그램 제공

- 사업개요 : 지방 문예회관, 전국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 사업
- 사업규모 : 8,737백만원
- 사업수행주체 : 전국문예회관연합회, 한국박물관협회
- 사업 집행절차·체계 등
  - 기본계획 확정 및 주관단체 사업계획 통보(문화관광부) → 주관단체에 지원액 통보 및 지원액 신청(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예산교부(문화예술위원회) → 사업공고 및 세부계획 수립·집행(전국문예회관연합회 등) → 사업수행 및 평가추진(전국문예회관연합회 등) → 실적보고(전국문예회관연합회 등) → 결과보고(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사업실적 평가(문화관광부)

## 3) 추진시기 : 2007.2월

## 1-2. 취약계층대상 문화예술교육 등 지원(복권기금사업)

### 1) 사업개요

노인·장애인·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등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특성화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적·문화적 양극화 해소 및 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고 문화복지 구현을 도모함

### 2) 사업내용 및 사업규모

- 노인/장애인/아동복지시설 등 대상 문화예술교육 : 7,400백만원
  - 문화예술 단체 및 전문강사들이 장르별(연극, 무용, 미술 등)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인근 문화시설 등과 연계하여 현장 체험 및 창작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지방문화원중심 지역향토문화체험프로그램 개발 지원 : 2,000백만원
  - 지방문화원 중심 지역별 특성화된 지역향토문화 체험프로그램 개발 지원
  - \* 1문화원 1특성화

### 3) 사업수행주체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메세나협의회, 전국문화원연합회

### 4) 사업 집행절차·체계 등

- 기본계획 확정 및 주관단체 사업계획 통보(문화관광부) → 총괄주관단체에 지원액 통보 및 지원액 신청(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예산교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사업 공고 및 세부계획 수립·집행(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전국문화원연합회) → 사업 수행 및 평가 추진(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전국문화원연합회) → 실적보고(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전국문화원연합회 등) → 결과보고(문화예술위원회) → 사업실적 평가(문화관광부)

### 5) 추진시기 : 2007.2월

## ⑥ 지원목표 : 예술의 가치보존과 확산

### 1-1. 예술보존조사연구지원

#### 1) 사업개요

소중한 예술 유산과 자료의 구축, 기록 보존 등 예술의 유·무형적 토대 강화 및 예술현상에 대한 비평과 연구 등 현장 비평 기능 활성화를 위한 여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 2) 지원신청 자격 :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

### 3) 지원대상 사업

- 발간 사업 : 문화예술 관련 문헌·시청각 자료의 신규 집필·개발 및 연구·평론 자료
- 세미나, 워크숍 등 연구·연수 사업
- 웹, IT 및 인터넷 활용 온 라인 문화예술 정보화 사업

4) 지원규모 : 500만 ~ 5,000만 원

5) 추진시기 : 2006.9월 신청공고 ⇒ 2006.10월 신청접수 ⇒ 2006.11~12월 지원심의 ⇒ 2006.12월~2007.1월 심의결과 발표

### 1-2. 기타 사업

- 1) 문화예술서적발간 : 문화예술지, 문예연감 발간, 문화예술기획시리즈 발간 등
- 2) 문화예술사회공헌활동지원 및 이미지제고사업 : 기부금 사업 등
- 3) 기초예술정책연구사업

## ㉑ 지원목표 :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 1-1. 지역문화예술지원

#### 1) 사업개요

- 지역문화예술단체의 각종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중앙과 지역간의 문화격차를 해소
- 지역의 문화적 역량 제고 및 지역 문화예술의 활성화 도모

2)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시·도 문화재단/위원회

3) 지원조건 : 정액지원 및 1:1매칭 지원(시도별 차등지원)

4) 사업규모 : 98억 원

- 지역문예진흥지원 : 48억 원
-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 : 50억 원

### 1-2. 기타 사업

- 1) 전국 연극제 지원
- 2) 전국 무용제 지원
- 3) 문화의달 행사 지원
- 4) 지역문화협의체 운영

## ⑧ 지원목표 : 예술의 국제협력 증진

### 1-1. 문화예술국제교류지원

#### 1) 사업개요

우리 문화예술의 해외소개 및 해외 문화예술의 국내 소개를 위해 문화예술 단체 및 개인의 전시·공연교류·세미나 개최·연수프로그램 참가 등 문화예술 해외 교류를 지원

#### 2) 지원신청자격 :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 3) 지원대상사업

- 전시·공연, 연구·연수사업 등 해외교류사업
- 국제기구가입단체 활동진작 및 국제사회위상제고 활동지원
- 국제스튜디오프로그램(Artist In Residence) 한국작가파견 사업
  - 독일 베타니엔 스튜디오 한국작가 파견

#### 4) 지원규모 : 사업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5백만 ~ 100백만원 내외)

#### 5) 추진시기 : 2006.9월 신청공고 ⇒ 2006.10월 신청접수 ⇒ 2006.11 ~ 12월 지원심의 ⇒ 2006.12월 ~ 2007.1월 심의결과 발표

### 1-2. 국제레지던스프로그램 운영 지원

#### 1) 사업개요

- 국내 지역별 주요 문화시설 운영자 및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창작 레지던스 공간을 마련하고 세계 문화예술교류의 거점으로 활용하며 해외작가 참여 기회 제공 및 교류협력을 강화
- 국가간 대표적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을 초청하여 국내외 예술가들의 장르간 협동 워크샵 실시를 통해 단순교류를 탈피하고 한국예술 세계를 해외 예술가들에게 인식케 함.

#### 2) 지원신청 자격 :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단체

#### 3) 지원 내용 : 외국 예술인 초청 체재비, 프로그램 운영 경비 일부 지원

#### 4) 지원규모 : 4,000만 원 ~ 1억 원

#### 5) 추진시기 : 2006.9월 신청공고 ⇒ 2006.10월 신청접수 ⇒ 2006.11 ~ 12월 지원심의 ⇒ 2006.12월 ~ 2007.1월 심의결과 발표

### 1-3. 남북 및 재외동포 예술교류 기반구축

#### 1) 사업개요

- 재외동포지역 문화예술보급 확산 및 현지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
- 남북간 문화동질성 확보를 위한 문화교류 사업 추진

#### 2) 지원신청 자격 : 민간 문화예술단체, 예술인

#### 3) 지원대상사업

- 남북간 문화예술교류사업 지원
  - 문화예술 전 분야 교류 협력사업 : 공연, 전시, 세미나 등
  - 남북간 민족문화 동질성 회복을 위한 문화예술 자료 수집 및 조사연구 사업
- 재외동포 문화예술교류사업
  -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 사업
  - 재외동포 예술인들의 문화예술활동
  - 재외동포 예술인의 초청, 파견, 연수, 세미나 등 예술교류활동

#### 4) 지원규모 : 5백만원 - 30백만원

#### 5) 추진시기 : 2006.9월 신청공고 ⇒ 2006.10월 신청접수 ⇒ 2006.11~12월 지원심의 ⇒ 2006.12월~2007.1월 심의결과 발표

### 1-4. 기타 사업

#### 1) 베니스비엔날레한국관운영 및 전시지원

#### 2) 해외예술기획프로그램지원 : 해외문화기관교류, 해외주요예술인초빙, 해외한국 문학자원기초조사 등

# 경기문화재단의 지원정책

표신중 경기문화재단 예술진흥팀장

경기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경기도가 1997년도에 설립하여 벌써 햇수로 9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짧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참고할만한 선례가 없는 상태에서 출범한 재단은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밖에 없었으며 그만큼 다양한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물론 그러한 변화는 “문화예술 환경의 변화”, 지방자치단체의 위상강화로 인한 “재단의 임무와 역할의 확대”에서 비롯된 바가 크지만 동시에 시대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내부의 노력도 크게 작용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기문화재단의 지원정책과 제도에는 지역적 특성, 다양한 정책적 실험을 통해 얻어진 경험들이 함께 녹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2004년도에 1997년 창립 이래 유지되어 오던 지원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작년(2005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제도의 개편은 어떤 이론적 모델이나 외부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그동안의 지원정책과 사업의 결과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경기문화재단의 과거의 지원정책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 현재의 지원제도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 1. 경기문화재단의 초기 지원정책의 종류와 특징 (1997 ~ 2004)

### 1) 공모 지원사업 (1997 ~ 2004)

#### (1) 문예진흥을 위한 일반공모 지원사업

■ 사업영역 : ① 문화예술 창작, 교육 ② 도민의 문화예술참여

#### ■ 특징

- 장르별, 지역별 안배, 소액다건주의 정책 - 지역간 격차가 큰 지역문화예술 환경 반영
- 지역예술인 보호정책 - 지원자격 도내 거주예술인 및 단체로 한정
- 자생력 확보를 위한 자부담금 제도 확립 (최소 30% 이상 자부담)
- 2001년부터 아마추어 예술 영역에 지원을 시작했으며 전체 예산의 1/3정도 할당

#### (2) 문예진흥을 위한 특별공모 지원사업

■ 특징

- 창작영역에 있어 소액다건 지양, 집중지원 효과 기대
- 전통문화연구 등 지역문화예술 연구인력 양성효과 기대

(3) 도단위 예술단체 예술행사 지원

- 사업목적 : 지역문화예술 단체의 연례행사 정기성 보장
- 사업대상 : 예총 경기지회, 민예총 경기지회, 문화원연합회 경기지부 등 예술단체

2) 기획지원 사업 (1997 ~ 2004)

(1) 문화예술인 상담, 육성, 후원 사업

- 신진작가 유망작가 예술작품 구입
- 실험예술 후원 : 경기 공공미술제, 유토피아&아토피아 등 순회전시, 디지털 예술제 개최

(2) 문화예술 기반조성 사업

- 소극장 활성화 사업
- 테마미술관 박물관 지원 : 경기도에서 지정한 민간 미술관, 박물관 지원

(3) 문화예술 향수 기회 증진

- 생활문예활동 후원 : 청소년문화예술 동아리, 학부모와 함께하는 예술활동, 순회공연 지원
- 문예 소양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교양강좌
- 공연 전시 지원
  - 찾아다니는 예술 무대 매년 1억 ~ 2억
  -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사업
  - 이주노동자를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사업

3) 지원사업의 제도 개선 필요성 및 주요 개선 내용

(1) 모니터링 결과 반영 - 심층모니터링 그룹, 시민모니터링 그룹, 언론연계 모니터링

- ① 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 필요 :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
- ② 예술인의 요구 수렴 : 창작현실 및 여건에 맞는 지원제도 요구

(2) 재단 중단기 발전계획(전망 2010)에 따른 재단의 과제와 지원사업의 일치

① 6대 사업목표 및 16대 세부과제 중 지원에 적절한 11개 영역을 지원사업에 적용

재단의 사업목표	지원영역	2005년도 지원분야
문화예술 창작 활동 진흥	문화예술 창작 활동 진흥	① 기초예술 창작발표활동 ② 공공실험예술활동 ③ 문화예술인 창조력 제고활동
도민의 문화예술 향수 및 참여기회 확대	도민의 문화예술 향수 및 참여기회 확대	④ 문화예술 교육활동 ⑤ 도민의 자생적 문화예술활동 ⑥ 소수자 문화예술향유기회증진활동
지역문화예술 균형발전	지역문화예술 균형발전과	⑦ 지역간 문화예술격차해소활동
문화예술인 국제교류 활성화	다양성의 조화를 위한 교류 활성화	⑧ 문화예술인 국제문화교류활동
경기도 정신문화의 계승과 창달	전통문화예술의 보급과 창조적 계승활동 지원	⑨ 지역문화예술 조사연구 및 평론활동 ⑩ 지역문화예술 정보화활동 ⑪ 전통문화예술보급과 창조적 계승활동
전통문화 유산의 보존과 현대화		

② 재단의 목적사업과 지원사업간의 연계 강화 : 상호 연계로 시너지효과 기대

(3) 주요 제도 개선 내용

① 장르 중심 지원에서 목표 중심 지원사업으로

- 기존 장르개념으로는 현대사회가 문화예술에 요구하는 새로운 변화 수용에 한계
- 목표 중심 전환으로 관습적 사업관행 해소, 사업별 목적의식 심화 기대

② 장르, 지역 안배 정책에서 경쟁 정책으로

- 도민의 문화예술향유 및 참여기회 확대 분야는 소액다건 및 지역안배 감안
- 예술창작 영역에서는 전문가 집단과 아마추어 집단 구분, 집중지원 가능한 경쟁도입
- 지역 여건 열악하여 자생력 취약한 지역을 위하여 지역 최소 배정액제 도입으로 보완

③ 평가환류 시스템의 도입

- 모니터링 결과를 심사에 도입 (긍정적 평가를 가산점으로 반영하는 포지티브 시스템)
- 우수사업 선정, 심사반영 이외에 지원효과 있는 사업도입

④ 기타 세부 사항

- 분배원칙에 입각했던 휴식년제 완화(2005) → 2006년 폐지
- 요청금액의 70%/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한도기준 완화
- 1단체 2지원 제도 도입
- 이중지원 제한 완화 (2005) → 2006년 폐지

## 2. 2007년 경기문화재단 지원사업

### 1) 공모지원사업의 종류 및 성격

#### (1) 문예진흥금 공모지원사업

- 공고시기 : 2006년 9월 중
- 지원규모 : 25억원 (예정)

지 원 분 야	신청주체(자격)			비고
	예술인	매개자	향유자	
① 전문예술인 문화예술활동	○	○	×	
② 공공·실험예술활동	○	○	×	
③ 문화예술인 연수활동	○	○	×	
④ 문화예술 교육활동 *	○	○	○	
⑤ 아마추어 문화예술활동 *	×	○	○	
⑥ 소수자 문화예술향유기회증진활동 *	○	○	○	예술치유영역은 기획지원으로 특화
⑦ 국제문화예술 교류활동	○	○	×	
⑧ 문화예술 조사·연구·평론활동	○	○	×	
⑨ 문화예술 정보화활동	○	○	×	

소액 분산지원 분야인 ④, ⑤, ⑥ 을 제외한 전 분야 선택과 집중 원칙 강화

○ 신청자격 :

#### [단체]

- 최근 1년 이상 경기도에 소재하며 최근 1년간 도내에서 1회 이상의 문화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중, 대표자가 주민등록 상 경기도에 최근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하는 단체 (단 경기도 단체로 명백히 입증되는 단체는 대표자 거주지 제한이 없음)
- 경기도에 분사무실·연습실 등을 두고 최근 1년 이상 경기도내의 문화예술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단체로, 대표자가 최근 1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하고 있는 단체
- ※ 경기도를 주제로 활동하고 있는 On-Line단체는 대표자 거주지나 단체 소재지 제한이 없음

#### [개인]

- 최근 1년 이상 경기도에서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한 경기도민 중에서 최근 1년간 경기도 내에서 1회 이상의 문화예술 활동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

○ 신청불가 :

- 국·공립 (도·시·군립) 기관 및 산하·출연기관(단체)
- 학원, 교습소, 언론사 또는 그 소속 단체
- 공고일 현재 2005년 이전 경기문화재단 지원금 수혜자 중 정산서 미제출 자 (단체)

- 경기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문화예술 모니터링을 거부한 자 (단체)
- 경기도로 부터 '도 단위 연례예술행사' 지원금을 받는 도단위 단체

**(2)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사업**

- 공고시기 : 2006. 12월 중 (예술위원회에서 통합공고)
- 지원규모 : 12억원 (예정)
- 지원분야 : 연극, 음악, 무용, 국악
- 지원대상 : 경기도에서 공연하고자 하는 전국 단체 (40% 타 도 배정)

**(3) 우수예술작품 다년간 지원사업**

- 사업목표 : 공연예술단체의 레퍼토리 개발
- 공고시기 : 현재 공고 중 2006. 7. 18 마감
- 지원분야 : 연극, 무용 (2007년 심사대상 분야 미정)
- 선정방식 : 서류심사로 실연 심사대상작 선정, 년 중 실연심사, 연말 지원작 결정
- 지원규모 : 3년간 매년 최고 6천만원까지 지원
- 지원대상

**[단체]** 최근 1년간 경기도에 소재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도내에서 1회 이상의 공연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중, 대표자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최근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하는 단체. 단 경기도 단체로 명백히 입증되는 단체는 대표자 거주지 제한 없음.

**[개인]** 최근 1년 이상 경기도에서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한 경기도민 중에서 최근 1년간 경기도 내에서 1회 이상의 문화예술 활동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

**(4) 지역문화공간 활성화 사업**

- 공고시기 : 2007년 상반기
- 지원규모 : 1억원 / 건당 약 2,500만원 (예정)
- 지원대상 : 소극장 등 공연이 가능한 지역문화공간, 백화점, 대형쇼핑몰 내 소극장 제외

**(5) 문화예술인 창작촌 활성화사업**

- 공고시기 : 2007년 상반기
- 지원규모 : 1억원 / 건당 약 1,000만원 (예정)
- 지원대상 : 2~3인 이상의 예술인이 상시적으로 활동하는 스튜디오 혹은 그 연합체

**(6) 장애인 예술활동 활성화사업**

- 공고시기 : 2007년 상반기
- 지원규모 : 5천만원 (예정) 건당 800~ 1,000만원
- 지원분야 : 예술치유 영역의 사업
- 지원대상 : 경기도 지역에서 1회 이상의 장애인 예술활동 경력이 있는 예술인(단체) 혹은 매개자(단체)로 개인은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하며 단체는 그 대표자가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이거나 사무실이 경기도에 소재해야 함.

**(7) 이주노동자 문화예술체험활동 지원사업**

- 공고시기 : 2007년 상반기
- 지원규모 : 5천만원 / 건당 약 1,000만원 (예정)
- 지원대상 : 경기도에 소재하며 이주노동자 및 국제결혼 가족과 직접 연관이 있고 이들을 위해 도내에서 공연, 교육 및 기타 활동을 2년 이상한 경력이 있는 단체

**(8)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사업**

- 공고시기 : 2007년 상반기
- 지원규모 : 4천만원 / 건당 150~200만원 (예정)
- 지원분야 : .. 공연, 전시 등 작품 활동 (음악, 미술, 연극, 문학 등)  
.. 전수, 캠프 및 워크숍 등 교육 프로그램  
. 사진, 애니메이션, 기타 동영상 등 미디어 콘텐츠 제작 활동  
. 축제기획, 아트마켓, 대중문화 모니터링 등 기타 문화예술활동
- 지원대상 : 경기도내 중 고등학교 또는 청소년 문화시설 및 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청소년 문화예술분야 동아리  
단체나 시설, 학교와 관계없이 경기도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로 구성 된 문화예술분야 동아리  
※ 만 13세 부터 만 24세 이하로 구성된 청소년 동아리여야 하며, 대학생으로만 구성된 동아리는 제외

**(9) 문화기반시설 및 지역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공모**

- 공고시기 : 2007년 상반기
- 지원규모 : 1억원 (예정)
- 분야 1 : 지역 문화예술교육 강사양성 프로그램 (지속가능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 대상 : 경기도내 문화예술교육 시행 민간단체, 공공단체, 기관 (지자체 지원기관 포함)
- 분야 2 :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및 기획자, 강사인력 교육 프로그램
- 대상 : 경기도 소재 공공/민간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  
경기도내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의집 등 공공/민간 문화기반시설

**(10) 문화예술교육 운영단체 공모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지원)**

- 공고시기 : 2006년 하반기 공고예정
- 지원규모 : 1억원 (예정) 건당 1,500만원
- 지원대상 : 경기도민에 대한 문화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단체  
지역문화센터(단체),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전문단체, 시민단체 등

**(11) 경기북부지역 청소년 문화예술 동아리활동 지원사업**

- 공고시기 : 2007년 상반기
- 지원규모 : 5천만원 (예정)
- 지원대상 : 경기북부 소재 학교 내 전통예술 동아리 (탈춤, 풍물, 소리, 기악, 민화 등)  
※ 경기북부는 고양, 구리, 남양주, 의정부, 가평, 동두천, 양주, 포천, 연천, 파주를 의미함

**(12) 경기북부지역 젊은 예술활동 지원사업**

- 공고시기 : 2007년 상반기
- 지원규모 : 8천만원 (예정)
- 지원분야 : 창작과 비평, 기획사업, 연수활동
- 지원대상 : 경기북부 거주, 만 39세 이하의 젊은 예술인 및 소집단

**2) 수시지원사업의 종류 및 성격**

경기문화재단의 수시지원사업은 공모지원과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 공모지원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으로 특별한 계기성이 있는 사업
- 공모지원사업 대상이나 공모기간 중 접수가 불가능했던 우수 사업을 대상으로 지원함

**(1) 도민의 문화예술접촉기회 확대**

- 지원예산 : 2억원 (2006년 예산규모)

○ 사업내용 :

- 도민의 문화예술향수기회 확대
  - 우수문화예술활동 도내유치 지원
  - 모니터링 결과 우수단체사업 추가지원
  - 관련 전문가 및 사회지도자 추천사업 도내유치 지원
- 소외자 문화예술접촉기회 확대
  - 소외계층 문화예술접촉기회 제공
  - 소외단체 예술활동 활성화 지원
  - 소외시군 예술활동 활성화 지원

(2) 2007 문화예술진흥사업

- 계기성 우수사업 지원사업 : 5억원 (2006년 예산규모)
- 언론사 연계 기획지원사업 : 3억원 (2006년 예산규모)

(3) 국제교류사업

- 지원예산 : 3억원 (2006년 예산규모)

경기문화재단 공모지원사업 일람표

사업내용	사업 및 분야	2007년 지원규모 (추정)	비고
전문예술인, 단체, 기획자에 의한 창작, 공연 등	문예진흥금 공모지원 분야1. 전문예술인 문화예술활동 분야2. 공공실험예술활동 분야3. 문화예술인 연수활동 분야7. 국제문화예술 교류활동	1,600,000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1,000,000	
	우수예술작품 다년지원 사업	150,000	
청년 예술인	경기북부지역 젊은 예술활동 지원사업	80,000	
문화예술공간 지원	문화예술인 창작촌 활성화사업	100,000	
	문화예술공간 활성화 사업	100,000	
소수자문화예술 체험	문예진흥금 공모지원 분야6. 소수자 문화예술향유기회증진활동	100,000	
	장애우 예술활동 활성화사업	50,000	예술치유
	이주노동자 문화예술체험활동 지원사업	50,000	
아마추어예술	문예진흥금 공모지원 분야5. 아마추어 문화예술활동	350,000	
문화예술교육	문예진흥금 공모지원 분야5. 아마추어 문화예술활동	150,000	
	문화기반시설 및 지역문화예술교육 전문인 력 양성 프로그램 공모	100,000	
	문화예술교육 운영단체 공모	100,000	
청소년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사업	50,000	
	경기북부지역 청소년 문화예술동아리 지원	50,000	
기타	문예진흥금 공모지원 분야8. 문화예술 조사·연구·평론활동 분야9: 문화예술 정보화활동	150,000	

# 민간 부문 재원 조성 및 운영 (SIDance의 사례를 중심으로)

황병철 시댄스 기획팀장

## 1. 사전계획

대부분의 예술단체들의 상황처럼 SIDance의 경우도 민간 부문의 재원(기업현찬, 기부 등)조성은 공공부문 재원에 비해 다양한 변수의 존재 및 불확실성이 크게 존재합니다. 해마다 민간 부문의 재원조성 계획은 치밀한 계획을 세우더라도 어긋나기 마련이며 이 어긋남에 대한 위기관리 대응은 nce의 재원조성 담당자에게는 전문성을 키우는데 중요한 지점이라 생각됩니다. SIDance의 재원조성 계획은 재원 운영 그리고 위기관리 계획까지 함께 포함합니다.

### (1) 예산운영 사업기간

- 사업기간 설정 : 차질 없는 재원 조성 및 집행을 위해 정확한 사업기간 설정 필요.

- SIDance 예산운영 사업기간 설정사례 (2006년 5월-12월)

: SIDance 초창기에는 사업기간에 대한 설정 없이 진행, 재원조성과 재원집행의 계획이 부족하다보니 조성과 집행의 불균형으로 인한 차질 발생. 이후 SIDance의 사업기간은 약 6개월 정도 설정을 통해 균형있는 조성 및 집행 추진, 사업기간의 확대는 결국 축제의 내실도를 다지는 데 중요한 지점이기에 올해부터는 사업기간의 확대를 피하고 있는 상황.

### (2) 수지예산편성

- 지출예산 편성

: 예산 편성시 고정비용과 유동비용 파악 및 유동비용의 최대 예산 파악에 중점

▶ 고정비용 : 사무국 경상경비, 극장 대관비

▶ 유동비용 : 공연단 초청 사업비, 홍보마케팅비, 기술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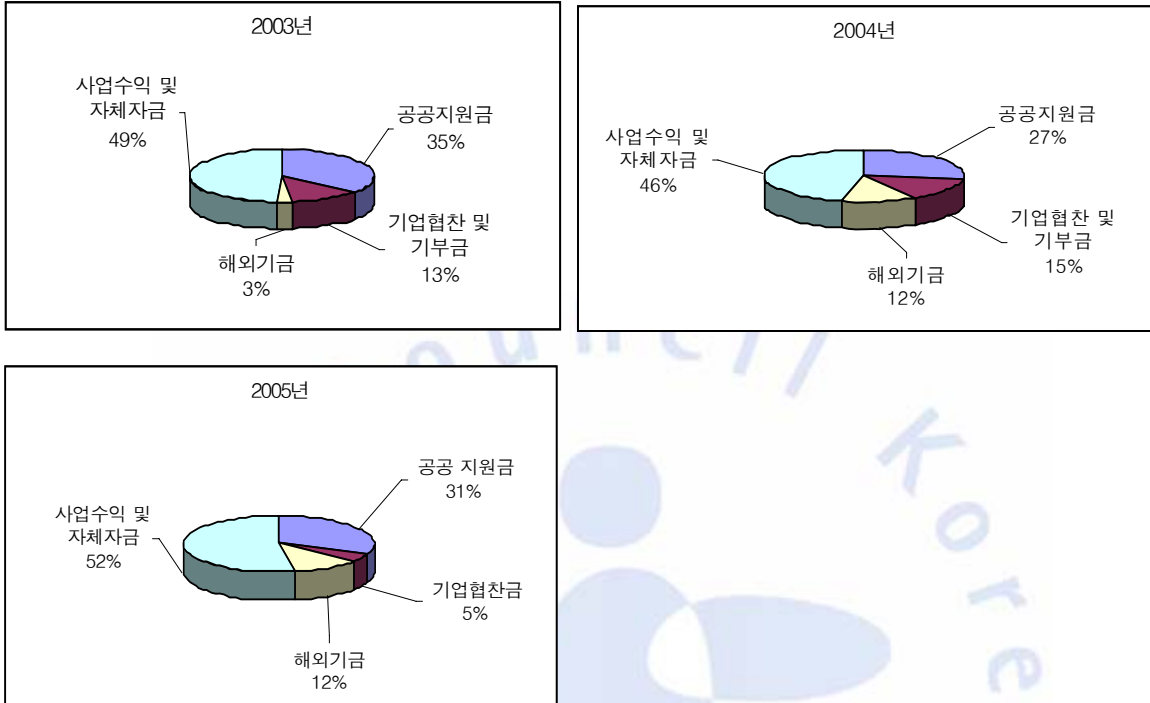
- 수입예산 편성

: 수입원 별 분류 및 예상치 설정

▶ 기확정수입(사업기간 이전 확정 수입) : 공공기금(국고, 문예진흥기금 등)

▶ 미확정수입(사업기간 이전 미확정 수입) : 협찬 및 기부, 티켓판매 등 자체수입, 해외 공공기금

사례) SIDance 3개년간 수입예산 비중



(3) 기업협찬 및 기부 수입 계획

- 수입예산 설정 후 기 확정 수입(국고, 문예진흥기금 등)과 티켓판매 등 자체 수입 예상치 분석 후 수지차액 산출
- 부족한 수입예산 중 기업협찬 및 기부 부문 목표치 설정
- 기존 협찬 및 기부사 총 수입예산 금액 파악 후 차액은 신규개발

사례)SIDance 협찬 및 기부 예산 설정 (단위:원)

		2003년	2004년	2005년
협찬 및 기부 설정예산	기존	40,000,000	70,000,000	70,000,000
	신규	40,000,000	50,000,000	30,000,000
기존협찬 및 기부 결과		26,000,000	64,000,000	34,890,000
신규협찬 및 기부 결과		84,000,000	58,991,000	1,500,000

## 2. 협찬 및 기부 대상처 선정 및 분석

### (1) 내부자산 분석

- 기존자산

: 축제의 공공성, 축제장소, 관객 및 회원 Data , 인적 Network, 홍보 Tool, Promotion Tool, 축제의 이미지 등

- 신규자산

### (2) 협찬 및 기부군 선정

- 기존 및 신규 자산과 매칭되는 협찬군 선정

- 메세나 활동 등 공연예술계 지원기업

- 기존 협찬처

### (3) 세부 자료조사

- 기존협찬사 : 동향 파악 (사후관리 및 기업 최신 정보), 최근 기업 Needs 파악

	기업	원인분석
실패사례	2003년 KTI	계열사 통합 미파악
	2005년 KT&G	문화예술부문 투자 축소 정책 미파악

- 신규협찬사 개발

: 신규사업 진출, 신규제품 출시, 다국적 기업 , 마케팅 방향, 기업 Image 변경 등

	기업	원인분석
신규사업 진출	2006년 GS 칼텍스	LG 그룹 독립후 브랜드 런칭
신규제품 출시	2004년 LG 오취	신규브랜드 출시
다국적 기업	2003-2005 르노삼성	프랑스 무용단과 연계
	2006 외국계 기업 4개사	핀란드 무용단 연계, 핀란드 대사관 연계
마케팅 방향 및 활동	2004년 금호건설	아파트 브랜드 '어울림', 기존 건설이미지에서 Life 스타일을 강조한 마케팅
기업 Image 변경	2003년KT&G	담배인삼공사KT&G, 상상예찬

- 자료 조사

: 기업 보도자료, 언론(종합지, 경제지, 마케팅전문 언론, CEO인터뷰 등) 보도기사

: 상공회의소 등 경제계 동향

: 타 공연 및 축제 정보교환

: 인적 네트워크

### 3. 협찬 및 기부 진행

#### (1) 제안

- 기업의 Needs에 부합하는 정확하고 간결한 제안
- 축제 혹은 공연의 기획의도, 주제 등 작품이 먼저가 아닌 협찬제안 내용에 우선 순위
- 신규 제안사는 내년도 협찬을 염두하고 미팅

#### 사례1) 기업의 Needs에 부합하는 협찬 제안 사례



기업 Needs	제안내용	성공분석
기업 이미지 변경	'KT&G 상상예찬과 함께 하는 SIDance2004 춤추러 가자 프로젝트'	'상상예찬' 이란 슬로건으로 모아지는 기업의 문화마케팅 전략에 부합
	보통 사람 춤추게 하기 = 상상예찬, 상상스캔들, 야외 대중 참여형 행사 개최	서울 시내 주요 인구 밀집 지역에서 대중 춤 공연을 통해 '상상예찬'이란 젊은 기업 이미지에 부합

기업 Needs	제안내용	성공분석
행사로부터 얻을 수 있는 Needs 없음. 기업 이미지 홍보 및 연간 협찬 및 기부 예산 사용	디지털 댄스 페스티벌, 신개념 디지털의 상징 삼성전자, 무용의 신개념 디지털 댄스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기업 협찬 및 기부 현황 파악. 연말 협찬 성공

사례2) 기업의 Needs에 부응하지 못한 협찬 사례

기업 Needs	제안내용	실패분석
VIP 고객 관리	SK 텔레콤 VIP 고객을 위한 티켓프로모션	SK텔레콤 VIP 고객 파악 실패 SK텔레콤 VIP 고객은 축구 등 스포츠 경기 관람에 어울리는 고객
브랜드와 매칭되는 프로모션	LG패션 광고 협찬	기업 마케팅 방향 파악 실패 브랜드마케팅 중인 기업에 특색없는 광고 제안
언론과 연계를 통한 방송광고	메세나 차원의 공공 문화행사 지원	대규모 지원을 위해서 언론사 후원 등 방송광고를 중요시하는 기업 상황 파악 실패

사례3) 목차로 살펴본 제안서 형식의 예

목차	부정적	긍정적
1P	표지	표지
2P	주최단체 소개	행사 기본개요
3P	주최단체 소개	행사 운영개요
4P	주최단체 소개	행사 규모
5P	주최단체 소개	협찬제안 개요(구체적 사항)
6P	주최단체 연혁	협찬제안 개요(구체적 사항)
7P	주최단체 연혁	협찬제안 개요(구체적 사항)
8P	주최단체 연혁	협찬제안 개요(구체적 사항)
9P	협찬제안 개요(일반적 내용)	협찬방식 및 Benefit(상세히)
10P	행사 소개	협찬방식 및 Benefit(상세히)
11P	행사 개요	협찬방식 및 Benefit(상세히)
12P	행사 구성	광고협찬 방식 및 Benefit(상세히)
13P	행사 일정	미리보는 협찬 Benefit (이미지 자료)
14P	공연단체 소개	미리보는 협찬Benefit (이미지 자료)
15P	공연단체 소개	미리보는 협찬Benefit (이미지 자료)
16P	공연단체 소개	미리보는 협찬Benefit (이미지 자료)

17P	공연단체 소개	
18P	공연단체 소개	
19P	공연단체 소개	
20P	공연단체 소개	
21P	협찬 Benefit	

## (2) 담당자 미팅 및 조율

- 담당자 미팅 : 협찬 불가능을 표시하며 만나주려 하지 않는 담당자라도 반드시 미팅, 추후 협찬 정보 수집에 주력
- 담당자 및 결제 Line 파악 : 협찬금액에 따라 결제 Line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협찬 요청금액에 따른 결제 라인 파악
- 프리젠테이션
  - : 협찬제안 내용 전달에 주력
  - : 행사 소개, 작품/ 예술단체 에 대한 내용, 행사의 공익성 주장 등은 최대한 간소하게
  - : 협찬사 요청 사항에 따른 대처능력, 새로운 제안 사항 준비
  - : 협찬 세부 조정 과정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명확하게, 협찬금액을 상회하는 Benefit 제공 사전 차단

## (3) 협찬 및 기부사 제공 사항

- 세제혜택 : 문화예술위원회 조건부 기부를 통한 기부금 세제 혜택
- Advertising : 후원방송사 계약을 통해 방송 TV Spot
- 인쇄홍보물 : 각종 인쇄홍보물 제작시 협찬사 로고 삽입, 협찬사 광고용 인쇄홍보물 제작 ex) 2002년 콘도스, 2005년 디지털 댄스 페스티벌
- 옥외홍보물 : 극장 대형 현수막 및 극장 내 현수막, 실내 배너 등 협찬사 로고
- 프로모션 용 티켓 제공
- 후원쉽 카드 제공
- 홈페이지 기업 로고 게재
- 인터넷 마케팅 웹레터 제공
- 기업을 위한 공연 제공
- 야외행사, Event 등 기업을 위한 독자행사 기획 제공 (기업 및 기업 고객 대상)

- 기업 고객들을 위한 혜택 (티켓 할인 등 ex: BMW 고객 할인, 카드사 고객 할인)
- 기업 자체 언론홍보를 위한 내용 제공 (ex: 우리은행 축제 지원, Naver 문화예술축제 지원)
- 해외 홍보 제공

#### 4. 위기 관리 계획

극장, 문화기관 등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예술단체의 재원 조성 책임자는 곧 재원 운영자와 동일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성 및 운영의 대상이 '돈' 이기에 무한 책임이 수반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재원 조성자는 재원 운영을 세심히 살펴야 하며 재원 조성의 진행 상황에 따라 수시로 재원 운영의 변경 및 위기 관리 모드를 가동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실무업무 차원에서 재원조성의 역할을 맡고 있는 실무자 역시 재원 운영과 위기 관리에 대한 계획이나 실행에 깊숙한 경험 없이는 서류제출자, 서류전달자로서의 기능밖에 전문성을 획득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재원 조성 못지 않게 중요한 재원 운영 및 위기관리 부문의 SIDance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2003년	2004년	2005년
협찬 및 기부 설정예산	기존	40,000,000	70,000,000	70,000,000
	신규	40,000,000	50,000,000	30,000,000
기존협찬 및 기부 결과		26,000,000	64,000,000	34,890,000
신규협찬 및 기부 결과		84,000,000	58,991,000	1,500,000

앞서도 나왔던 위 표의 구성처럼 협찬 및 기부의 계획과 결과는 대단히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2003,2005년의 경우는 특히나 위급한 상황들이 발생하여 여러 위기 관리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 <2003년 협찬 가능 금액 예상 후 위기관리 모드 바로 가동>

- 위기관리

##### 가. 행사를 축소할 것인가?

- 축제가 포기할 수 없는 것 중 하나는 양질의 프로그램 구성, 행사 규모 유

지

**나. 예산 부족분에 대한 확보 가능한 재원 및 가능성은?**

- 공공부문 기금 : 리서치 및 기금에 어울릴 수 있는 행사구성
- 공연 지방판매 : 동일 시기 개최 무용축제 및 지방 공연장 연계
- 신규 협찬 개발 : 고액 협찬사 1개사 개발에 올인
- 마케팅 강화 통한 판매수입 증대 : 세계적 수준 공연단 2단체 마케팅 강화

**다. 진행결과**

- 공공부문 기금 : 한국 마사회 기금 확보, 방송발전 기금 확보(방송발전 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제1회 디지털 댄스 페스티벌 동시개최)
- 공연 지방판매 : 하멜 표류 350주년 기념 한-네델란드 공연, 하멜 표류지인 제주도에 공연판매 성공
- 신규 협찬 개발 : 가능한 모든 방법 동원, 고액 협찬사 1개사 신규 개발
- 마케팅 강화 : '프렐조까주' 마케팅 성공, 전라의 공연 사진 언론사 1면 장식, 유료 객석 점유율 72.2% 다다르며 기존 예산 수입 초과

**<2005년 협찬 진행 중 위기 관리 가동>**

- 위기관리

**가. 행사를 축소할 것인가?**

- 행사축소 가능 시기 지나감, 행사규모는 그대로 진행

**나. 예산 부족분에 대한 확보 가능한 재원 및 가능성은?**

- 공공부문 기금 : SIDance는 가능성 없음
- 공연 지방판매 : 지역 무용축제 및 지방 공연장 연계 시기 놓침
- 신규 협찬 개발 : 협찬사 개발 시기 놓침
- 마케팅 강화 통한 판매수입 증대 : 마케팅 강화 프로그램 선택, 한국공연 '전무후무'
- 합작 기금 분담 조절 : 외국과의 합작 프로그램 예산 분담, 상대국 예산 확보
- 신규 사업 개발 : 가능 사업 검토

**다. 진행결과**

- 마케팅 강화 : 전무후무 출연진 원로 합동 인터뷰, 조선일보 단독 취재, 유료 점유율 82.6%
- 합작 기금 분담 조절 : 멕시코, 일본 합작 파트너 예산 분담 및
- 신규 사업 개발 : 서울 아트 마켓 공동사업 기획 및 개최

#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소고

서진석 대안공간 루프 대표

"법인이십니까?"

"전시작가가 미협에 가입해 있나요?"

어느 단체에 후원을 받으려고 했을 때 들었던 질문이다. 정확하게 '예스' '노'로 구분될 수 있는 이런 지극히 형식적인 질문들을 받게 되면 사실 어딘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해진다. 나는 이번 전시회의 기획의도가 무엇인지, 또 이 작가의 작품이 어떤 점에 있어서 정말 새롭고 매력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 열심히 얘기하려고 잔뜩 준비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단답형의 형식적인 대답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럴 때면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나기도 한다. 푸치니 오페라의 공연을 준비하던 한 오페라단 관계자가 기업체 간부를 만나 후원을 요청했을 때의 일이라고 한다. 푸치니의 오페라가 어떤 점이 훌륭한지에 대해 한참 설명을 했더니, 그 점잖게 생긴 기업체 간부가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다.

"그러면 공연 때 푸치니씨도 함께 오시나요?"

기업의 문화예술지원 활동, (예를 들면 메세나) 60,70년대 미국과 유럽의 경제선진국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90년대에 와서야 그 중요성이 본격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IMF 이후 한때 주춤하다가 작년에는 모두 929억원의 투자로 IMF 이전보다는 못 하지만 2000년에 비해서는 48% 정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분야별로 볼 때 외국의 경우, 가장 활발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는 역시 미술 쪽이다. 이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미술 분야가 상대적으로 투자 이익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이상하게도 음악 분야의 지원이 미술 분야의 지원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금호현악4중주단과 금호아트홀을 운영하고 있는 금호그룹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단적인 예로 외국에서 유명 뮤지컬을 들여왔다면 아마 기업체 후원을 받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잘 알려지지 않은 신진 작가가 전시회를 연다고 할 때 이를 선뜻 후원해 주겠다고 나서는 기업은 거의 없

다고 봐도 된다. 이는 기업들의 문화지원 활동을 '문화적 투자'로 보고 있기보다는 '경제적 투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쉽게 말해서 입장권을 팔거나 아니면 신문지상에 그에 상응하는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어야만, 비로소 투자에 나서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다.

그것도 장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아주 단기적인 관점에서 승부를 내려고 하니 더욱 문제다. 미술 작품에 투자를 할 때도 현재 잘 나가는 유명 작가의 작품만을 선호하지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대성할 수 있는 미완의 신진작가에게 투자하는 모험은 되도록 기피하려고만 한다. 사실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후자의 경우가 훨씬 더 실속 있고 가치 있는데도 말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기업측의 예술을 보는 심미안이다. 문화에 대한 정보가 풍부하고 심미안이 있는 담당자라면 당연한 주관을 갖고 자신이 속한 기업에나 우리나라 문화계 전반을 위해 모두 이로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아직 우리나라에 그런 기업은 별로 많지가 않다. 때문에 기업 후원을 얻으려고 하면 사실 '문화단체 대 기업'으로 부딪치는 것보다 '개인 대 기업'으로 부딪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때가 많다. 간단히 말해서 '대안공간 루프'의 이름보다는 그 기업체에 누구누구라는 선배가 있는 서진석이라는 개인의 입장에서 일을 해나가는 게 훨씬 더 편할 때가 많다는 얘기다. 정보도 부족하고 알려고 하는 의지도 별로 없다 보니 그래도 확실히 통하는 게 소위 말하는 인맥과 배경이다.

언젠가 어느 자리에서 몇 년간 꾸준히 순수 자비를 들여 음악회를 열고 있는 한 기업인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클래식 애호가인 이 기업인은 자기 이름이 알려지는 것이 싫어서 수년간 완전히 익명으로, 그 많은 비용을 군말 없이 계속 부담해 주고 있다고 한다.

기업들의 문화 지원활동은 한 국가의 문화적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중 하나이다.

자신이 후원해준 음악회에 아무도 모르게 혼자 앉아서 음악을 즐기고 있는 열굴없는 한 기업인의 흐뭇한 미소.... 우리나라에도 그런 멋진 기업인이 점점 더 많아지기를 기원하는 것은 사실 나 뿐만 아니라 이 척박한 시대, 살얼음판 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문화인들의 한결같은 소망일 것이다.

# 기업 입장에서 문화예술 지원

이병권 한국메세나협회의 사무처장

## 1. 기업이 문화예술에 지원하는 이유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 기업의 이미지 제고 차원
- 다양한 마케팅 수단으로서의 활용
- 인적관계에 의한 지원
- 기 타

## 2. 기업 담당자들의 기피 유형

- 친분관계 과시형
- 읍소형
- 먹자놀자형
- Who I am ? (몰이해)

## 3. 기업 담당자들이 관심 갖는 접근

- 해당 기업이 과거에 진행했던 지원 유형 분석에 따른 접근(전년도)
  - ▶ 홈페이지 내용 분석, 기사분석 등
- 기업이미지를 차별화할 수 있는 제안
  - ▶ 홍보사업 검토 및 제안
- 마케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제안
  - ▶ 주요 마케팅 상황 점검

## 4. 문화예술 지원예산은 어디에 있는가 ?

- 기업홍보실(팀/부) : 70%
- 마케팅본부(부/팀) : 20%
- 기타(공장/영업본부) : 10%

## 5. 기부/협찬에 대한 예산 구성

- 기업체의 모든 예산은 연초에 결정되며, 전년도 10월부터 예산 수립
- 총액 확정 - 세부항목 60% 확정

- 예산 증액 : 기업의 위기상황 제외하고 증액은 어려움
- 지원 대상 : case by case

## 6. 의사결정 과정

- Top -Down 방식
  - : CEO 및 최고경영진의 판단 및 결정
    - ▶ 감소추세.
    - ▶ 문화재단 및 홍보실 등의 의견 존중 추세
- 해당부서 책임 운영 방식
  - ▶ 기업 및 브랜드 운영 전략에 따라 해당부서에서 기획 주도
  - ▶ 대기업 확산 추세. 담당자 전문화 추세

## 7. 기분 좋은 문화예술공연 제안이 되려면

- 문화예술단체 스스로가 마케팅전문가 그룹으로 탈바꿈되어야
  - ▶ 시장/고객/경쟁상황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대처방안 수립
  - ▶ client(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마케팅 분석 및 접근
- 수혜의 대상이 아닌 Win-Win의 정신과 준비 필요
- 기업의 홍보/마케팅에 대한 문화예술차원의 컨설턴트가 되어야 함.
- 다양한 아이디어 개발 필요
  - ▶ 기업별 맞춤형 제안 필요
- 장황한 기획서 보다 핵심이 분명한 요점정리가 더 효과적
- 기업의 담당자에게 항상 새로운 정보제공자가 되어야 함.
- 끊임없는 노크와 시도 필요
- 기분 좋은 다양한 접근이 필요
  - ▶ 생일카드/뉴스레터/공연안내/최근 공연계 주요 화제/문화계 트렌드/경쟁사 지원 현황 등

-----

**▣ 이병권의 주요 약력**

● 주요 학력

- 서강대학교 사학과 졸업
- 서강대학교 서양사 대학원/언론대학원/경영대학원(MBA) 졸업

● 주요 경력

- (주)플무원 홍보팀장
- (주)옥시 마케팅 팀장
- (주)해태제과 기업홍보부 수석부장
- (주) PDS미디어 기획이사
- 한국메세나협의회 사무처장(현)

# 문화예술 기부금에 대한 세제

임주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대외협력팀장

## 1. 일반 기부금의 특징

- 기부금은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이므로 원칙적으로 법인세 및 소득세에서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되는 대부분의 지출은 세무상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게 되며, 따라서 비용이 증가되면 과세 표준이 줄어들어 납부할 세액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기부금으로 지출할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아무리 지출을 많이 해도 납부할 세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부금은 공익성이 있으므로 세법에서 정한 기부금의 경우 일정한도 이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 ○ 기부금의 종류

종 류	구 분	한 도 액
법정기부금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 국방헌금,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	소득금액의 100%
특례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한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기부금	소득금액의 50%
지정기부금	공익성기부금으로 법인세법(소득세법)에서 한정적으로 열거	법인은 소득금액의 5%, 개인은 10%
비지정기부금	상기한 3가지 기부금 이외의 기부금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 받지 못함

## 2.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기부금 세제의 적용

-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기부는 일반적으로 지정기부금이나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 개인이나 법인이 문화예술 단체에 공익성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소득금액의 10%(법인은 8%)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법인은 손비로 인정)됩니다.
- 학술연구, 장학, 문화·예술, 종교, 사회복지법인 등은 법인세법 및 시행령에 의해 별도 지정절차 없이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로 인정됩니다.
- 이와 별도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일반 비영리법인의 경우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공익성 등의 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지정(공고)하는 경우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매 분기별로 지정하며, 2006.3.31현재 894개 지정

###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기부금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에 해당합니다.
- 개인이나 기업이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 등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단체에 직접 기부할 경우 소득세법 제34조/법인세법제2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2항에 의해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개인의 경우 소득공제)되어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 그러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하여 기부할 경우,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은 임의단체 및 개인에게도 지원이 가능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1항에 의해 법인의 경우 연간 소득 금액의 75% 한도내(개인의 경우는 100% 한도)에서 손금에 산입(개인의 경우 필요경비 산입)되어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 4. 예시

#### 예시①) 연봉 5,000만원인 B씨가 1,000만원을 기부한 경우

B씨의 근로소득금액은 3,600만원 【5,000만원(근로소득) - 1,400만원(근로소득공제)】입니다.

- i) 기부금 손금인정을 받지 못할 경우 : 만약 B씨가 1,000만원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일반 문화예술 단체나 개인에게 기부한 경우 1,000만원을 기부하여 B씨의 실제 근로소득 금액이 2,600만원이 되더라도 1,000만원은 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3,6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최종 납부 소득세액: 522만원)
- ii) 지정기부금 대상이 되는 단체에 기부하였을 경우 : 소득세법에 의거 근로소득금액의 10%인 360만원이(1,000만원을 기부하였다고 할지라도) 기부금 공제한도액이 되어 1,000만원 중 360만원만 기부금으로 인정되고 3,600만원에서 360만원을 공제한 3,24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최종 납부 소득세액: 460만 8천원)
- iii)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하여 기부할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근로소득금액의 100%인 3,600만원이 손금 산입 한도가 되므로 1,000만원을 기부할 경우 2,600만원에 대한 세금 352만원만 납부하면 되므로 같은 금액을 기부하였을 때 손금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보다 170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 연봉5,000만원의 경우 근로소득 공제액 : 1,375만원+4,500만원 초과금액의 5% = 14,000,000원

\* 연봉5,000만원의 경우 소득세액 : 80만원+1,000만원 초과 금액의 17% = 5,220,000원

#### 예시②) 매출액이 10억원인 법인C의 경우

C의 연 매출액이 10억원이고 비용이 8억원이며 이 비용 중 1억원을 기부하였다고 할 경우 회계상 당기순이익은 2억이 될 것이나 세무상 과세표준은 이와는 다르게 계산됩니다.

- i) 기부금 손금인정을 받지 못할 경우 : 1억을 기부하였음에도 과세표준이 3억원이 되어 6,300만원의 법인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ii) 지정기부금 대상이 되는 단체에 기부하였을 경우 : 비용에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이 7억원이며 매출수익에서 이 7억을 차감한 금액이 3억이 되고 여기의 8%인 2,400만원이 지정기부금 한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은 2억원이 아니라 2억7,600만원이 되는 것이고 5,700만원의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어 손금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비하여 600만원의 세금을 덜 내는 셈이 됩니다.
- iii)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하여 기부할 경우 : 비용에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이 7억원이며 매출수익에서 이 7억을 차감한 금액이 3억이 되고 여기의 75%인 2억2천5백만원이 지정기부금 한도가 됩니다. 한도 내인 1억원을 기부하였으므로 기부금액 전액이 공제대상이 되어 과세 대상 금액은 2억원으로 3,800만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2,500만원의 세금을 덜 내는 셈이 됩니다.

(단위 : 천원)

구분	기부금	과세표준	법인세	세금효과
기부금 손금인정을 받지 못할 경우	100,000	300,000	63,000	0
지정기부금(8%)	100,000	276,000	57,000	6,000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기부(75%)	100,000	200,000	38,000	25,000

※ 소득세법 제55조 : 소득세율 및 과세표준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8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8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7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59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6
8천만원 초과	1천63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 법인세법 제55조 : 법인세율 및 과세표준

법인세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3
1억원 초과	1천30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 근로소득 공제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전액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50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의 5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225만원 + 3000만원 초과금액의 10%
4500만원 초과	1375만원 + 4500만원 초과금액의 5%